

【 2017.3.10(금) 강원일보 】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
동 건설회관에
서 열리는 중앙
회 제17차 이사

회에 참석해 협회 및 업계 현안
에 대해 논의.

【 2017.3.10(금) 강원도민일보 】



오인철
도건설
협회장
은 10
일 오

전 11시 서울 논현
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대한건설
협회 제17차 이사
회에 참석한다.

'침체 늪'에 빠진 강원 건설경기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강원도 건설 경기가 올해 다소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 발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도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동북지방통계청과 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건설수주액은 482억원이다. 지난해 1월 수주액 2975억원보다 83.8% 감소했다. 공공 부문 수주액은 41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8%나 줄었다.

특히 주택 건설 등이 위축되면서 민간 부문 수주액이 크게 줄었다. 지난 1월 민간 수주액은 64억원에 그쳐 지난해 1월 민간 수주액 981억원보다 무려 96.9%가

**1월 건설수주액 482억원 그쳐
민간분야 지난해보다 96.9% ↓
공공발주 물량도 크게 줄어**

**미분양 늘고 주택인허가실적 저조
부동산 경기도 위축 가능성 높아**

감소했다. 공공과 민간 분야의 수주가 움츠러들면서 지난해 활황세를 누린 도내 건설경기가 올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도 건설업계의 공공건설 수주액은 1조4832억원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경기도 살아나면서 도내 공공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2만1233가구로 1년 전보다 72%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 도내 건설 관련 지표들은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공공건설 발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전망이다. 올해 계획된 도 공공건설 발주량은 3조3775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보다 4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수준으로 알려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건설 특수가 끝나면서 대형 공사 발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도 만만치 않다. 올해 1월 도내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592가구에 그쳐 지난해 동월 대비 77.4%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 미분양 주택은 3466가구로 전년 말 1876가구보다 크게 증가했다.

최근 도내 주택 착공이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에 대규모 입주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공사 이후 공사 물량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형 프로젝트의 조기 발주와 도 건설업계의 참여 폭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아하! 그렇구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산정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간접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간접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06713 판결). 실무상 간접비청구를 인정하면서 간접비를 산정할 때는 감정을 거친 후 감정결과에 대한 쌍방의 주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간접노무비의 경우 구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에서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공사비 산정방식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이 그 연장된 공사기간에 예상되는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고들이 연장된 공사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22179 판결).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이 개정된 후에도 그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위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고, 감정인이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06713 판결).

실비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산정할 때 간접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되었다. 국가계약법령이나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등에서 실비를 산정할 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그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간접공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므로, 간접공사비를 산정할 때는 도급내역서에 정한 율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시켜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200594 판결).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공사입찰에 참가하면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0원으로 기재한 경우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청구에서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어떻게 인정할지도 문제가 되었다.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0원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내역서를 작성할 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항하는 비용을 다른 비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조정하였던 점을 들어서 계약상대자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간접공사비를 지출한 이상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인정할 관례도 있고, 이와 달리 이윤 없이 공사를 수행할 것처럼 내역서를 제시한 이상 다시 이윤의 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다.

이응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